

영등포구의회
제17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호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13. 4. 29.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198호로 2013년 4월 18일 김주범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효행장려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2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예산필요

다.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 양천구외 17개 자치구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가족구조의 변화와 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노인을 부양하고 효를 중요시하는 미풍양속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임.

우리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2010년 42,083명에서 2013년 3월 현재 46,11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도 2010년에는 8,955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10,027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대상 노인 6,745명 중 전체 노인의 13.8%인 931명이 노인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 되었음.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행문화와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8년 8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2010년 3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으로 권고 한 바 있음.

우리구도 2012년 5월 17일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제도적 준비는 미흡한 실정으로 효행을 장려하고 효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따라서 본 개정안이 실제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에게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효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부양자에게 지원하는 20만원 기준은 타 자치구 사례와 유사한 수준임.

2013년 3월 현재 우리 구 100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218명이며 2012년도 100세 이상 노인에게 위문금으로 지원된 예산은 28명 2,800천원이었고, 2013년도 예산은 35명 3,500천원이 편성되어 주민등록상 인구와 실제 지급대상자와의 차이가 있음.

효행장려금 예산은 연 7,000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지원하고 있는 100세 이상 노인 위문사업과 본 조례로 시행하고자 하려는 효행장려금 지원이 같은 세대에 중복 지원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 위문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관 련 법 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